
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8일

전라북도지사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붙임

나. 처분기간 : 2020. 12. 29. 0시 ~ 2021. 1. 3. 24시

다. 시설별·활동별 준수사항 : 붙임

라. 처분이유

-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발생 추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을 맞춰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 , 제4항

아. 손해배상 :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

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-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(12월 30일부터 시행)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수 있으며,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참고1

비수도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

※ **청색 볼드체(밑줄)**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

구분	비수도권 특별대책 방역조치
①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식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5인부터 예약,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, 결혼식,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(다만, 직장 회식은 금지)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▶ 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*,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 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
실외 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	▶ 집합금지
백화점·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② 기타 다중이용시설	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수의 50% 이내로 예약 제한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파티룸	▶ 집합금지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해맞이·해넘이 주요 관광명소	▶ 최대한 폐쇄

구분	비수도권 특별대책 방역조치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
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u>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</u> ▶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종교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u>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원칙</u> * <u>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·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·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</u>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

구분	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
①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공통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시설 5종	▶ 집합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카페(무인카페 포함)	▶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홀덤펍	▶ 집합금지
실내체육시설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하고 21시 이후 (익일 05시까지)운영 중단
결혼식장	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▶ 좌석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구분		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
	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	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	아·미용업	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	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② 기타 다중이용시설		
	사회복지이용시설	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
	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	교통시설 이용	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	스포츠 관람	▶ 관중 수 제한(수용 가능인원 10%)
	등교	▶ 밀집도 1/3 준수 (고교 2/3)
	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

참고3

문의처 (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)

*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

연번	조치분야	부서	담당자	연락처
1	전국 방역강화 특별대책 지침	보건복지부 (생활방역팀)	044-202-1721~9	
2	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	사회재난과 (사회재난대응팀)	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	063-280-3823 063-280-3822 063-280-3796
3	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건강안전과 (식의약안전팀)	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안경주	063-280-2456 063-280-2440
4	요양시설	노인복지과 (노인시설안전팀)	주무관 김기욱	063-280-2461
	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	보건의료과 (감염병대응팀)	주무관 성 현	063-280-2431
5	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문화예술과 (문화콘텐츠팀)	주무관 박준영 주무관 이현주	063-280-3432 063-280-3386
6	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	(주관)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	주무관 이주희	063-239-3442
		(협조) 자치행정과 (행정팀)	주무관 김재구	063-280-2947
7	실내체육시설, 겨울 스포츠 시설	체육정책과 (체육시설관리팀)	주무관 김용일 주무관 안채영	063-280-2541 063-280-2543
8	숙박시설	농어촌숙박시설 (농어촌정비법)	농촌활력과 (생생마을팀)	주무관 김영옥 063-280-4295
		숙박시설 (관광진흥법)	관광총괄과 (마이스산업팀)	주무관 김민경 063-280-2704
		숙박업소 (공중위생관리법)	건강안전과 (위생관리팀)	주무관 이란주 063-280-4673
9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정책관 (소상공인팀)	주무관 문혜숙	063-280-3256
10	상점·마트·백화점		주무관 김다정	063-280-3213

연번	조치분야		부서	담당자	연락처
11	직업훈련기관		일자리경제정책관 (일자리취업지원팀)	주무관 황지웅	063-280-2831
12	놀이공원·워터파크(물놀이형 유원시설)	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주선희	063-280-3301
13	공연장		문화예술과 (도서관문화시설팀)	주무관 최효진	063-280-3387
14	결혼식장		여성청소년과 (여성권익팀)	주무관 최하라	063-280-2524
15	목욕장업, 이미용업		건강안전과 (위생관리팀)	주무관 이란주	063-280-4673
16	장례식장		노인복지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장경애	063-280-2513
17	관광명소	관광지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유재준	063-280-4742
		국·도·군립공원	자연생태과 (자연환경팀)	주무관 하은진	063-280-4173
18	종교시설		문화유산과 (종무팀)	주무관 정경화	063-280-4744